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- 1. 제 출 자 : 허창원 의원 등 6인
-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- O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 - O 회부일자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O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충청북도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O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 (안 제2조)
- O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- O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(안 제5조~제6조)
- O 서예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(안 제7조)
- O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O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된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서예진흥법」)에 따라 충청북도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
- O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,
 -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,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2조~제3조)와
 -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(안 제5조~제6조) 및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(안 제8조)에 대해 규정을 하였음.
- O 현재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경기도와 전라북도이며 앞으로 서예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- 한국 서예는 디지털문자영상시대 도래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서예를 방치한 결과 작품수준의 저하는 물론 서예인구의 고령화, 학교 현 장에서의 서예교육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' 문화예술진흥법'에 따라 영화음악, 만화,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 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제정 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. 끝.